

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

(제정) 2022.01.10 조례 제355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“주민조례청구권자”(이하 “청구권자”라 한다)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)

- ① 목포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법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(이하 “주민조례청구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·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- ② 목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해야 한다.

제4조(주민조례청구권자 수)

-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목포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.
-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,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.

제5조(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서 등)

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서(이하 “청구서”라 한다)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
제6조(대표자증명서 발급 등)

-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

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.

1.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청구의 취지 및 이유
3. 서명요청 기간
4.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

제7조(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)

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,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
제8조(청구인명부)

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
제9조(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)

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.

1.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청구취지 및 이유
3. 연서주민수
4.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
5. 이의신청 방법

② 의장은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.

제10조(공표 방법)

법 제5조제3항,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목포시보, 목포시 게시판, 목포시 홈페이지(목포시의회 홈페이지) 또는 일

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
제11조(이의신청)

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12조(보정기간)

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.

제13조(사무협조)

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
 2.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
-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에 따라「목포시 주민 조례 제·개폐청구 조례」는 폐지한다.